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26 - 2201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위탁개요

1. 사 업 명 : 세종창업키움센터 관리·운영
2. 위탁기간 : ’27. 1. 1. ~ ’29. 12. 31. (3년)
3. 사 업 비 : 총 465,000천원 ※ ’27년 기준 155,000천원
 * 사업비는 위탁수수료 포함 금액이며, 사업계획 변경, 의회 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위탁시설 현황
 가. 시설명칭 : 세종창업키움센터
 나. 시설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296
 다. 시설규모 : 지상3층 / 연면적 993.66㎡
 라. 입주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마. 공간구성 : 창업공간 15개실, 코워킹스페이스, 다목적실, 회의실 등

구분	1층	2층	3층
면적	143.67㎡	482.61㎡	367.38㎡
주요시설	시제품전시장 주차장(7대) 기계실, 정보통신실 화장실	보육실 7실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2실(운영실) 상담실, 다목적실 기자재실, 화장실	보육실 8실 회의실 1실 기자재실, 화장실

2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창업 기업 보육시설의 운영 실적 또는 창업기업 육성(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관련실적은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로 제한하며, 인정 여부는 담당부서에서 최종 판단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3. 해당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전문성 및 노하우 등을 갖추고, 공고된 위탁사무 및 운영 요구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없어야 함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거나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 불가

3 위탁내용

1. 세종창업키움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
 - 입주기업 선정 및 평가, 입주공간 배정 및 관리, 사용료 징수 등
2.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멘토링·컨설팅 등
3. 창업기업 사업화·마케팅·판로지원 및 투자유치 등 성장지원
4. 대학·민간 창업보육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5. 세종창업키움센터 건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6. 입주기업 성과관리(매출액, 고용 등 성과지표 작성) 및 보고
7. 그밖에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4 접수기간 및 방법

1. 공고기간 : ’26. 11. 9.(월) ~ 11. 23.(월), 15일간

2. 접수기간 : ’26. 11. 9.(월) ~ 11. 23.(월) 10:00~18:00 ※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3.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등 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은 단체(법인)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 제시

4. 접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창업벤처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1. 선정방법

가. 수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6. 12. 3.(상기일정 변동가능)

※ 일정 확정 시 개별 통보

나. 주관부서의 정량평가와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며, 고득점순으로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기관을 선순위자로 하며, 이 경우에도 동일하면 추첨으로 결정

라. 2개 기관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함

마.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바. 수탁기관 선정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약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

2. 평가기준(심사항목 및 배점)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8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정량적 평 가 (20점)	기관평가 (8점)	ㅇ 기관의 경영상태	4	재무건전성 평가
		ㅇ 재정 운영의 투명성	2	감사실시, 재무보고서 작성, 결산 공개 등
		ㅇ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확보 정도	2	
	전문성 (6점)	ㅇ 참여인력의 전문성 확보 정도	6	**참여 인력**의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등
	수행실적 (6점)	ㅇ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수행 실적	6	실적 건수 및 규모
정성적 평 가 (80점)	사업추진 이해도 (15점)	ㅇ 사업 목적 및 과업에 대한 전체적 이해도	15	
	사업계획 평가 (35점)	ㅇ 사업 수행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및 차별성·성과창출 가능성	25	
		ㅇ 예산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10	
	사업운영 능력 (30점)	ㅇ 소통·민원 대응 및 문제해결 역량	5	
		ㅇ 지역 창업유관기관 협력 및 외부자원 연계 역량	5	
		ㅇ 센터 운영관리 및 입주기업 관리 역량	10	
		ㅇ 조직·인력 운용 능력(고용안정성, 근로여건 등)	10	고용승계 계획 포함

3. 협약체결 : 수탁기관 선정대상자와 협약

※ 선정대상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신청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 신청기관이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공모할 수 있다.

6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①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및 평가본 9부) <서식 제1호~제10호>

- 50p(25매) 이내(표지·목차 제외) 양면인쇄, 스프링제본

② 사업계획 발표자료 10부(원본 1부 및 평가본 9부)

- 사업계획 발표용 PPT 자료 30p(15매) 이내(표지·목차 제외) 양면인쇄, 스프링제본

2. 공모참가 관련 서류

③ 공모참가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대표자 인감날인)

④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서식 제2호>

⑤ (공동수급의 경우) 합의각서 <별지서식 제3호>

⑥ 서약서 <별지서식 제4호>

⑦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별지서식 제5호>

⑧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별지서식 제6호>

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서식 제7호>

⑩ 정량적 평가분야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명서류 <별지서식 제8호>

⑪ 참여기관 인력 적정성 체크리스트 <별지서식 제9호>

⑫ 법인(기관)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10호>

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11호>

⑭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⑮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⑯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신분증 지참

⑰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등

⑱ 기타 공모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 형태 】

1) 출력본 : 원본 1부, 복사본 9부

2) 메일 별도송부 : 제출본 일체 PDF 변환본(사업계획서·사업계획 요약서·증빙자료 등)

- 담당자 전자메일(razolright@korea.kr)로 별도 송부

7 결과발표

1.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게재

8 유의사항

1.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함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등
2. 수탁기관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해야 함
3. 위탁시설 종사자는 상근으로 위탁사무 업무를 전담(참여율 100%)해야 하며, 종사자 신규채용 시 세종시에 사전통지 및 공개 모집하여야 함
 ※ 세종창업키움센터 전담인력의 타 민간위탁·용역사업 참여 시 협약 해지 가능
4. 수탁받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5. 협약 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관련 사항 위반 시 협약 해지 가능)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6조(협약의 해지 등)
6. 인계받거나 수탁 이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상하반기) 보고해야 함
7. 수탁기관은 사업비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사무 관련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함
8.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협약해지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위탁사무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함
9.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음

10. 세종시는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재산관리 실태 등 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함
11. 수탁기관은 대표 및 내부 임직원의 성희롱 · 폭언 · 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함
12.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세종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13. 수탁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신청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3. 수탁기관 모집 안내서 및 협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협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시와 수탁기관의 협의에 의함
4. 신청기관은 우리시로부터 제공받은 모집 안내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신청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임하여야 함
6.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여야 함
7. 기타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 창업벤처팀 담당자에게 문의
 - 담당자 : 이충현 주무관 (☎ 044-300-4034, razolright@korea.kr)

붙임 : 수탁기관 모집 안내서 및 제출서식 1부. 끝.